

입증인 1인의 사실확인서

사 실 확 인 서

※ 본 사실확인서의 증명이 허위, 위조 등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(공·사 문서위조, 변조 등)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아래의 경력 사실을 입증합니다.

(입증인) 성명 :

(서명)

※ 입증인 : 객관적으로 지원자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(동일 사업장·직종에서 근무했거나 하고 있는자)

* 첨 부 : 입증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) 1부

☐ 입증인 인적사항

입 증 인 성 명		생 년 월 일	
연락처(휴대전화)		지 원 자 와 의 관 계	
주 소			
근 무 처	직 위	근 무 처 호	

※ 위 사실확인서의 진위확인과정에서 자료보완 등을 위해 추가서류(입증인의 인감증명서, 공증 확인 등)를 요구할 수 있음

☐ 입증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

수 집 항 목	수집·이용 목적	보유기간
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(휴대전화), 지원자와의 관계, 주소, 근무처, 직위, 근무처 전화번호	지원자 경력사항 증명 진위여부 확인	진위여부 확인 완료 후 파기

※ 입증인은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,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자의 경력사항이 입증되지 않아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

■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십니까?

동의

미동의

☐ 지원자 경력 사실

지 원 자 성 명		생 년 월 일	
근 무 직 장 명	직 위	재 직 기 간	담당업무내용
		년 월 일 ~ 년 월 일	
		년 월 일 ~ 년 월 일	
		년 월 일 ~ 년 월 일	
		년 월 일 ~ 년 월 일	

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귀하

□ 입증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유의사항

-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: 입증인이 시·군·구청이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출장소 포함)에서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시 발급 가능
- 입증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 또는 가림 처리하며, 일반 용도 (그 외의 용도)에 “한국수자원공사제출용”, “경력증빙용” 중 택일 기재
- * 자세한 사항은 아래 “작성방법 및 유의사항” 참고

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24. 4. 2.>

문서확인번호

*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 있음

본인서명사실확인서

※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

성명 (한자)	()	서	
주민등록번호	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가림	명	
주소			
용도	매도 용도	[] 부동산 매수자, [] 자동차 매수자	
		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)	주민등록번호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)
		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	
일반 용도 (그 외의 용도)	“한국수자원공사제출용”, “경력증빙용” 중 택일 기재		
위임받은 사람	성명		
	주소(자격증 소지자 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)		
위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			
		발급 신청자	(서명)
비 고			
발급번호		수수료	600원

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
읍장·면장·동장 및 출장소장

직인

작성방법 및 유의사항

1. 서명은 작성자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(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,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상의 기호)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.
2.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,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,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3. 용도란[부동산 매도 용도 및 자동차 매도 용도의 경우 성명(법인명), 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, 주소를 포함합니다] 및 위임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으로부터 구술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입력하고, 신청인은 전산 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, 그 사실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4.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수자가 “국가” 나 “지방자치단체”, “국제기구” 와 “외국정부”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법인·단체 또는 기관(공사·공단 등)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“지방공사” 및 “지방공단”,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새마을금고(중앙회 포함) 등 은행, 보험회사 등의 기관인 경우에는 용도의 매도용란에 매수자인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.
5. 용도의 일반 용도(그 외의 용도)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기관이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. [예시: 근저당설정용, 가등기설정용, 은행제출용, 대출보증용, 선박등기용(매수자의 성명 등), 법인등기용, 공탁금 수령용, 보관금 수령용 등]
6. 위임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하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. 다만, 변호사,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(예시: ○○○ 법무사).
7. 발급 이후에 용도, 위임받은 사람 등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, 이 확인서를 위조·변조하는 경우에는 「형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8. 비고란은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표시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,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,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)를 적습니다.
9.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는 무료입니다.

210mm×297mm[특수용지(80g/㎡)]